

기간제근로자(간호사) 채용 재공고

상계보건지소에서 상계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이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19. 8. .



1.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

채용분야	인원	자격기준	비 고
기간제근로자 (간호사)	2명	간호사 면허증 소지자	· [별첨 1]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·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

2. 근무조건

- 근무부서 : 상계보건지소(상계평생건강관리센터)
- 계약기간 : 2019. 8. 28. ~ 2020. 8. 27. (1년)
2019. 9. 16. ~ 2020. 9. 15. (1년)
※ 재평가를 통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계약 가능
- 담당업무 : 평생건강관리센터운영, 대사 기초검진결과에 따른 상담 및 처방, 주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, 건강관리사업 홍보 및 행사 지원, 기타 건강증진사업 지원 등
- 근로시간 : 주5일(40시간) 09:00~18:00 (휴게시간 : 12:00~13:00)
- 급 여 : 1,920,000원 (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)
※ 4대 사회보험 가입
- 복무규정은 근로계약서 및 노원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

3. 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19. 8. 9.(금) ~ 8.19.(월) 09:00~18:00
- 접수방법 : 방문(제출서류 지참) 및 전자우편(mis1393@nowon.go.kr)

○ 접수장소 : 상계보건지소 (노원구 상계로 118,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3층)

4. 제출 서류

○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.

※ 노원구청 홈페이지 <http://www.nowon.kr> 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

○ 해당 면허증 사본 및 면허신고확인서 각 1부. (원본지참 확인 후 반환)

○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. (관련학과 졸업증명서)

○ 주민등록등본 1부.

○ 경력(재직)증명서 1부. (해당자)

○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(해당자)

-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등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(☎1577-0606)에 확인

※ 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함

5. 채용일정

○ 채용방법 :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최종 합격자 결정

○ 서류심사 결과 발표 : 2019. 8.20.(화)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

○ 면접일시 및 장소 : 2019. 8.21.(수) 11:00(예정) 상계보건지소

○ 최종 합격자 발표 : 2019. 8.22.(목)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

※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는 없음.

※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발생시를 대비하여 채용 분야별
평정 성적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

6. 유의사항

○ 응시 서류상의 허위,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,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○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 (2019.10. 1. ~ 10. 30.)

※ 문의처 : 노원구 상계보건지소 (☎02-2116-4989)

[별첨1]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

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취업지원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 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
 2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
 3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
 4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
 5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
-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.
-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.